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557 |
|----------|-----|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9일 이정인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인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 공연장 등에서 이들을 위한 좌석 모두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 현행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공연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¹⁾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관람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등 관람석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1항).

1)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 <u>장애인 등의 관람석</u> ----- -----. ② (현행과 같음) |

나. 서울시 최적관람석 운영 현황

(1) 최적관람석 설치 배경

- 현행법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관람석으로 구분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²⁾).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

-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 등의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관람편의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상의 최적관람석은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② 관람하기 좋은 위치로 정의 하고 있는데,
 -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 하고 있지만, ②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3))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대상시설은 ‘서울 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 2019년 4월 기준 총 22개소임.

3)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 현황>

|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
| 1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대극장 | 광진구 구면천로 | 12 | 블루스퀘어 뮤지컬 공연장 | 용산구 이태원로 |
| 2 | 성북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동 | 13 | 블루스퀘어 콘서트 공연장 | 용산구 이태원로 |
| 3 |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 강북구 월계로 | 14 | 삼청각 | 성북구 대사관로 |
| 4 |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강북구 월계로 | 15 | 서울돈화문 국악당 | 종로구 율곡로 |
| 5 | 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 | 도봉구 노해로 | 16 |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 | 마포구 증산로 |
| 6 | 목동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서로 | 17 | 삼일로창고극장 | 중구 삼일대로 |
| 7 | 세종체임버홀 | 종로구 세종로 | 18 |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 도봉구 마들로 |
| 8 | 세종M씨어터 | 종로구 세종로 | 19 | 서울월드컵경기장 | 마포구 월드컵로 |
| 9 | 세종S씨어터 | 종로구 세종로 | 20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 마포구 월드컵로 |
| 10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종로구 세종로 | 21 | 고척 스카이돔 | 구로구 경인로 |
| 11 | 남산국악당 | 중구 필동 | 22 | 장충체육관 | 중구 동호로 241 |

*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19.4월 기준)

-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 대상 시설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 414석, 최적관람석 수도 414석으로 현재 조례상의 최적관람석 설치 좌석수를 모두 충족 하고 있는 바, 장애인석을 모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지원지원과)는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 관람석의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연장 등 관리 부서 또한 대부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 연번 | 시 설 명 | 전체객석 | 장애인석 | 최적 관람석 | 최적관람석/ 장애인석 |
|----|------------------------|---------|------|-----------|----------------|
| | | 120,799 | 414 | 414 | 100% |
| 1 | 서울시립청소년 수련관대극장 | 303 | 3 | 3 | 100% |
| 2 | 성북청소년수련관 | 169 | 3 | 3 | 100% |
| 3 |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 301 | 3 | 3 | 100% |
| 4 |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283 | 3 | 3 | 100% |
| 5 | 시립창동문화 체육센터 공연장 | 188 | 4 | 4 | 100% |
| 6 | 목동청소년수련관 | 337 | 4 | 4 | 100% |
| 7 | 세종체임버홀 | 443 | 5 | 5 | 100% |
| 8 | 세종M씨어터 | 609 | 7 | 7 | 100% |
| 9 | 세종S씨어터 | 320 | 4 | 4 | 100% |
| 10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 3022 | 20 | 20 | 100% |
| 11 | 남산국악당 | 302 | 16 | 16 | 100% |
| 12 | 블루스퀘어뮤지컬 공연장 | 1,767 | 18 | 18 | 100% |
| 13 | 블루스퀘어콘서트 공연장 | 1,400 | 14 | 14 | 100% |
| 14 | 삼청각 | 206 | 4 | 4 | 100% |

| | | | | | |
|----|----------------|--------|--------|-----|------|
| 15 | 서울돈화문국악당 | 140 | 2 | 2 | 100% |
| 16 |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 | 300 | 접이식 의자 | 3 | 100% |
| 17 | 삼일로창고극장 | 60 | 가변형 객석 | 1 | 100% |
| 18 |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 200 | 접이식 의자 | 2 | 100% |
| 19 | 서울월드컵경기장 | 66,704 | 186 | 186 | 100% |
| 20 | 서울월드컵경기장(보조) | 1,020 | 20 | 20 | 100% |
| 21 | 고척 스카이돔 | 16,784 | 38 | 38 | 100% |
| 22 | 장충체육관 | 4,507 | 40 | 40 | 100% |

*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19.4월 기준)

3 종합 검토 의견

-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안전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위치가 확보된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재 설치된 최적관람석을 축소하지 않고 보장하며, 앞으로 신축 예상되는 공연장의 최적관람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실질적인 관람편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상에 최적관람석을 정의하고 있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앞으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례를 통한 장애인등의 실질적인 관람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57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상훈, 이승미, 권순선,
전병주, 박순규, 여 명,
이성배, 신정호, 김소영,
전석기, 김경우, 오현정,
이영실, 이병도, 문장길,
노승재, 이태성, 홍성룡,
김화숙, 문병훈, 송아량,
이은주 의원 (22명)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 공연장 등에서 이들을 위한 좌석 모두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관람석”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u>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 <p>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 ----- <u>장애인 등의 관람석</u>----- -----.</p> <p>② (현행과 같음)</p> |